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1138호
- 다. 제출일자 : 2023. 8. 14.
- 라. 회부일자 : 2023. 8. 21.

2. 제안사유

-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교통유발량이 적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신설하고, 서울시 나눔카 활성화 3기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민간 시설물 내 나눔카 배치 유도수단이었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통유발계수 중 데이터센터 항목 계수 신설

- 별표2의 교통유발계수에서 방송통신시설(대분류) 하에 데이터센터(세분류)를 신설하고, 0.82의 계수 설정

나. 나눔카 관련 규정 삭제

- 나눔카의 정의를 규정한 제2조4호아목 및 이행기준, 경감비율을 규정한 별표1의 '나눔카이용' 란을 삭제
- 나눔카 관련 규정 삭제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경감신청서, 경감률 결정통보서 등 별지1~3호 서식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있음(원안의결)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

의견 :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3. 4. 13. ~ 5. 3.)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시 필요한 교통유발계수 중 데이터센터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3기 나눔카 사업종료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규정에서 나눔카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데이터센터 교통유발계수 신설 관련

-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및 제37조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고, '22년도의 경우 2,425억원을 부과해 2,393억원을 징수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 ①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ext{부담금} = \text{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times \text{단위부담금} \times \text{교통유발계수}$$

- 현행 조례 별표2는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을 대분류17가지, 소분류 34가지로 나누고 있으며, 데이터센터는 분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방송통신시설 중 전신전화국으로 분류하여 교통유발계수 1.0을 적용하고 있음[별첨1 참고]
-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1)으로 데이터센터의 적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교통유발계수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승용차 공유이용(나눔카) 관련 규정 삭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72호, 2022. 12. 20., 일부개정·시행]
- 데이터센터 교통유발계수(0.82)를 신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

2항3) 및 별표44)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는 승용차 공유이용을 통해 승용차 교통수요관리를 유도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서울시 승용차 공유이용 활성화 사업」(이하 나눔카 사업)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5) 등 공적지원6)을 추진하였음

로그랩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② 법 제3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2. 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부담금 경감률(%)
3. 승용차 수요 관리	라. 승용차 공유이용 지원(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유이용 승용차 상시배치)	종사자 및 이용자	승용차 1대 운행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2(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3(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5) 서울특별시조례 제6261호, 2016.7.14. 일부개정, 2016. 8. 1. 시행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에 나눔카 신설 등

6) 공적지원 : 시설물 주차장 내 나눔카 주차면 배치 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서울시 공영주차장 내 주차면 배정, 공영주차장 내 주차요금 50% 할인

※ 1~3기 나눔카 사업 개요

구분	1기	2기	3기
사업 기간	'13.1.3.~'16.4.30.	'16.5.1.~'19.6.30	'19.7.1.~'22.12.31
사업자	쏘카, 그린카	-1차년도 : 에버온, 쏘카, 그린카, 한카 -2~3차년도 : 에버온, 쏘카, 그린카	-1~2차년도 : 쏘카, 그린카, 피플카, 딜카 -1차년도 : 쏘카, 그린카, 피플카
사업 방식	민간사업자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추진		
사업 내용	공적지원		

- 서울시는 3기에 걸친 나눔카 사업으로 초기 도입물량을 달성⁷⁾하였으나, 나눔카 사업자의 독과점이 발생⁸⁾하였고, 나눔카에 사용되는 친환경 차량비율이 고비용 등으로 점점 감소⁹⁾하여 친환경 정책에 역행하는 한편 승용차 등록대수 증가¹⁰⁾로 교통수요 감축효과가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적지원을 중단하는 계획¹¹⁾을 수립하였음
- 동 개정조례안은 '22년 12월 말 3기 나눔카 사업기간 종료에 따라 나눔카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7) (사업목표) 2,500지점/10,000대 → (성과) 2,549지점/9,457대 ※'22년 10말 기준

8) 나눔카 사업자(쏘카, 그린카, 피플카)의 매출액(3,546억원)이 카셰어링 시장의 98.5%

※쏘카 : 유가증권 상장('22.8), 그린카·피플카 : 각각 롯데렌탈(주), 휴맥스모빌리티(주) 계열사로 편입

9) 나눔카 차량수 : '14년 972대 중 친환경차 184대(18.9%) → '22년 9,457대 중 친환경차 383대(4.0%)

10) 서울시 승용차 등록대수 지속 증가('13년 2,338천대 → '21년 2,740천대)

11) 나눔카(승용차공동이용) 향후 추진계획(교통정책과-36360호, '22.12.20)

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고, 그 동안 나눔카 시장상황의 변화 및 정책적 효과 미미 등을 고려할 때 민간경쟁을 유도하고 일부 사업자에 편중된 공적지원을 중지한다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서울시는 나눔카 사업 종료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위해 동 조례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¹²⁾」도 정비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1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4(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별표5 나눔카전용주차구획 등

※[별첨1] 현행조례 별표2 :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분류	유발계수
1	근린생활 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68
		나	일반음식점	2.56
		다	실외골프연습장	5.00
		라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1.8
		마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1.44
2	의료 시설	가	종합병원	2.56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1.34
3	교육연구 시설	가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은 제외)	1.42
		나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	0.90
4	운동시설	가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	1.68
5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1.80
6	숙박시설	가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2.62
		나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1.16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1.81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	10.92
		다	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1.81
8	위락시설	가	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3.84
		나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2.16
9	관람집회 시설	가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3.55
		나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4.16
		다	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3.55
10	전시시설	가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나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11	공장시설	가	-	0.47
12	창고저장 시설	가	창고, 하역장	0.61
13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5.56
		나	철도시설	4.13
		다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 분 류	유발계수
14	자동차 관련시설	가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1.49
		나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15	방송통신 시설	가	방송국, 촬영소	1.89
		나	전신전화국	1.00
16	관광휴게 시설	가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3.10
17	그 밖의 시설물			1.20